

건설기계 ☐ 부적합 ☐ 시정권고 통지서			
성명		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	
건설기계명		등록번호	
예상정비 소요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		
건설기계 ☐ 부적합 ☐ 시정권고 항목 및 사유			
※ 본 통지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함. 수령인: (서명)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의 부적합·시정권고 내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검사대행자 : 인 (문의전화 :)			
1.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이 통지서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판정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시·도지사의 정비명령서를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. 시정권고 처분된 건설기계는 시정권고 사항을 정비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			